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성폭력범죄 또는 성희롱 사건을 심의하는 군무원징계위원회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도록 하고, 군무원징계위원회 및 군무원항고심사위원회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7월 2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장 진영

●대통령령 제30882호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일부개정령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위원회의 회의 구성) 법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구성하는 경우로서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하는 회의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제3조제1항 본문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연장”을 “연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기간에”를 “기한에”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1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징계의결등의 기한 연기에 대해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5조제4항 중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 또는 구두로 위원회에”를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중징계등 요구사건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해야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 ① 위원회의 징계등에 관한 회의는 위원과 징계등 혐의자, 징계의결등 요구자, 증인, 피해자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하 이 항에서 “출석자”라 한다)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 및 출석자가 같은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회의를 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징계등 혐의자 및 피해자의 신상정보, 회의 내용·결과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8조제2항 중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및 징계등 요구의 내용과 그 밖의 정황을 고려하여야”를 “혐의 당시 직급, 징계등 요구의 내용,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평소의 행실,

공적(功績), 뇌우치는 정도 및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야”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 ① 위원회의 징계등에 관한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소지할 수 없다.

1. 녹음기, 카메라, 휴대전화 등 녹음·녹화·촬영이 가능한 기기
2. 흉기 등 위험한 물건
3. 그 밖에 징계등 사건의 심의와 관계없는 물건

② 위원회의 징계등에 관한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녹음, 녹화, 촬영 또는 중계방송
2. 회의실 내의 질서를 해치는 행위
3.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제14조제3항 중 “법 제69조의3제2항”을 “법 제69조의3제2항 및 제69조의4제2항”으로, “의결하여야”를 “의결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심문과 진술권 및 사실조사”를 “심문과 진술권, 사실조사, 원격영상회의 및 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으로, “제5조 및 제6조제4항·제5항을”을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6조제4항·제5항, 제7조 및 제13조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직권면직 대상자”로”를 ““직권면직 대상자”로, “징계등 사건”은 “직권면직에 대한 의견이나 동의 여부”로”로, ““직권면직”으로”를 ““직권면직”으로, “징계등에 관한 회의”는 “직권면직에 관한 회의”로”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등 확인) ①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감사원과 검찰·경찰 등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해당 공무원이 법 제6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지 및 법 제69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인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확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정황”을 “사정”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회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징계의결등 요구자의 위원회 출석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4조(위원회의 징계등 사건 의결 시 고려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징계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이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 해당하면 퇴직을 허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6884호, 2020. 1. 29. 공포, 7. 30. 시행)됨에 따라 임용권자가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성폭력범죄 또는 성희롱에 해당하는 징계사건이 속한 인사위원회의 회의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도록 하고, 인사위원회가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징계 등에 관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성 비위 사건 관련 인사위원회의 회의 구성 개선(제2조의2 신설)
징계사유가 성폭력범죄 또는 성희롱에 해당하는 징계사건이 포함된 인사위원회의 회의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포함되도록 함.
- 나. 원격영상회의 근거 마련(제7조 신설)
인사위원회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사건에 관한 회의의 심의·의결을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임용권자는 징계 등 혐의자 및 피해자의 신상정보와 회의 내용·결과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다. 징계 등의 정도 결정 시 고려사항 정비(제8조제2항)
인사위원회가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사건을 의결할 경우 고려해야 하는 사항에서 근무성적을 제외하고 혐의 당시 직급 및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함.
- 라.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등 확인 절차 마련(제14조의2 신설)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감사원과 검찰·경찰 등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해당 공무원이 징계사유가 있는지 및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도록 하고, 확인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그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확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20년 7월 28일

국무총리 정 세 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장 진 영

●대통령령 제30883호

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

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기간을 연장”을 “기한을 연기”로 한다.